

2026년 향남읍 종합감사 결과



만세구 자치행정과

2026년 향남읍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6. 2. 23. ~ 2. 27. <5일간>
- 감사범위 : 2023. 2. 4. ~ 2026. 2. 27.
- 감사인원 :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등 9명
- 감사분야 : 기관운영 업무전반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총 25건 [처분요구 26건]

기관명	처분요구(건)				재정상 조치(원)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통보	계	추징	회수	환급	계	주의	훈계
향남읍	26	18	6	2	5,341,750	1,573,000	3,748,750	20,000	26	19	7

○ 모범사례 : 1건

처분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방법	금액(원)
		26건	6건	5,341,750
계	지적건수: 25건	주의 18 시정 6 통보 2	추징 3 회수 2 환급 1	1,573,000 3,748,750 20,000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미게재	주의		
2	팀장 및 주무관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주의		
3	보안진단의 날 지연 및 미 실시	주의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시정	추징	1,500,000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6	복무관리(육아시간, 공가) 소홀	시정		
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지연	주의		
8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추징	28,000
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시정	추징 환급	45,000 20,000
10	사업예산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주의		
11	회계독립의 원칙 위반	주의		
12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포인트 처리 누락	통보		
13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14	경로당 지방보조금 집행 및 유지보수 지원 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1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기준 및 유효기간 적용 부적정	통보		
16	시설공사 공사감독 부적정	주의 시정	회수	3,465,000
17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18	환경보전비 계상 소홀	주의		
19	도로유지보수사업(단가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주의		
20	수의2인이상견적 제출 공고기간 부적정	주의		
21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 지연 및 미 실시	주의		
2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부적정	주의		
23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시정	회수	283,750
2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	주의		
25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미준수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분번호	01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미게재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그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제28조의8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8조의8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역에 대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 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¹⁾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등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등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등을 하였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했으며,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등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향남읍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총 **개월분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등 내역을 미게재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등 대장 기록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미게재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미게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02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팀장 및 주무관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은 20**. *. *. “○○○○○○○○○○○○○○○○○○○○○○○○○○○○○○” 등 총 **건의 문서를 팀장 및 주무관이 1인 결재로 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읍·면·동의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과 같고, 각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국장·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 “생략”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팀장 및 주무관이 전결권자의 결재 없이 1인 결재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03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진단의 날’ 지연 운영 및 미 실시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은 월례적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르면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 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매월 보안진단의 날 실시 및 결과 제출 요구 공문을 향남읍에 시달하였다.

따라서 향남읍은 매월 정해진 날짜(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의 날’ 을 운영하여 재분류 검토 및 비밀소유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향남읍은 아래 [표]와 같이 20**년 *월 ‘보안진단의 날’ 을 20**. *. **.에 실시해야 함에도 **일이 지난 20**. *. **.에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였고, 20**년 *월 보안진단의 날을 실시해야 함에도 미실시하는 등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총 **회(지연 **회, 미실시 *회) “보안진단의 날” 을 지연 운영 및 미실시하였다.

[표] ‘보안진단의 날’ 지연 및 미실시 현황 -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향남읍에서는 매월 실시되는 보안진단의 날 운영에 대하여 정해진 날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보안진단의 날” 을 지연 운영 및 미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04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1,500,00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환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3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남읍은 이륜자동차 미신고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령에 따라 위반 사항별 알맞은 과태료 금액을 적용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사항을 적용하여 적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은 아래의 [표]와 같이 화성서부경찰서 등 통보 기관으로부터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자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 ○○○○○○ 등 3명에게 이륜자동차 미신고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각각 500,000원을 부과하여야 했으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나 과태료 부과를 소홀히 한 바 있고, 향후에는 철저히 확인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부과가 누락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번호	05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교육 수료 직원을 위한 축하 꽃바구니 구입에 *건(**,***원), 부서장 이·취임식을 위한 꽃다발 구입에 *건(***,***원)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책 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야 하며,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및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경우에는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있고, 축의·부의금품은 결혼 또는 사망에 한정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해당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집행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교육 수료 직원 축하 목적으로 *건(**,***원), 부서장 이·취임식 꽃다발 구입 *건(***,***원)을 집행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건(총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예산의 성질에 맞게 집행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06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복무관리 소홀(육아시간 및 공가)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육아시간 사용 규정 미준수

가.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속 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 4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확인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4시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가로 신청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최소근무 시간인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일 사용한 육아시간을 승인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육아시간 부적정 사용 현황 - “생략”

2. 공가 사용 부적정

가.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라 직원들의 공가 및 특별휴가 등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공가를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가로 허가해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의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특별휴가로 승인하여야 할 항목을 공가로 사용하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연가 및 공가 사용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향후 직원들이 육아시간 및 공가 사용시 사용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기 사용한 육아시간 2시간을 취소하고 연가일수 공제로, 기 사용한 공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 사용으로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번호	07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지연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매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를 추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 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 ‘Ⅴ.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따르면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임시주소로 주민등록이 된 자이므로 17세가 되는 달에 발급기간(공고 익월 1일 ~ 12개월째 말일)을 적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17세가 되는 달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내줘야 하고,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미발급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2026년 향남읍 종합감사 자료 제출」공문의 붙임 [3. 민원 분야] 파일에 각 공고일자를 20**-**-**, 20**-**-**로 기재하여 제출했으나, 아래의 [표]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공고 총 2건을 각각 *일, *일 지연하여 공고하였다.

[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지연 내역 -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향남읍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 36조에 따라 신규 발급통지 후 해당 월 내에 공고를 하여야 했으나, 업무 미숙 및 착오로 인하여 공고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편람 숙지를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통지서를 내줄 수 없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공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08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28,000원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주민등록신고 지연 등의 위반 사유를 근거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제3항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2. 개별기준 다.)에 따르면 7일 이내는 1만원, 1월 이내는 3만원, 3월 이내는 5만원, 6월 이내는 7만원, 6월이 지난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2. 개별기준 라.)에 따르면 7일 이내는 5천원, 1월 이내는 2만원, 3월 이내는 3만원, 6월 이내는 4만원, 6월이 지난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남읍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지연 기간 및 과태료 감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부과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은 아래의 [표]와 같이 ○○○ 등 총 *명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최고 또는 공고 여부나 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본세를 오적용하여 과태료를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산정 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전 담당자 교차 확인 절차를 마련·운영하겠으며 또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과소 부과한 28,000원은 추징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산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번호	09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환급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20,000원 45,000원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한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집적회로 칩이 내장
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 원을 수수료로 징수
하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 원을
징수한다. 그리고 「2025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IC칩 수수료는 부과 대상으로 5천 원을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지문 재등록 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문정보 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이전 증 반납 시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증 재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증 미반납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안 미적용 증(2006. 11. 1. 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 시 이전 증을 반납한다면 “보안기능추가”로 선택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분실”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표]와 같이 ○○○ 등 *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건이 수수료 면제 대상[그 밖의 사유(보안기능 추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총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 등 *인의 신청 건은 수수료 징수 대상[용모(사진) 변경, 분실, 집적 회로 칩 내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총 **,***원을 미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향후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과다 징수한 **,***원은 환급, 과소 징수한 **,***원은 추징하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번호	10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예산 목적 외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향남읍은 2023 ~ 2024년 축산과로부터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세부사업) 공공운영비(통계목)로 재배정²⁾ 받았고, [표 1]과 같이 ‘공설묘지 관리(세부사업)³⁾’에 공공운영비(통계목)로 간이화장실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2) 세출예산 재배정 확정알림(2023. 2. 14. / 2024. 2. 5.)

3) 2023년 세부사업명: 공설묘지 간이화장실 관리 / 2024년 세부사업명: 공설묘지 관리

[표 1] 향남읍 공설묘지 관리(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발취) - “생략”

따라서 향남읍은 간이화장실 전기요금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는 ‘공설묘지 (간이화장실) 관리(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은 아래 [표]와 같이 ‘방역차량 GPS 단말기 수신료’를 재배정 받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세부사업) 예산이 아닌 차량관리(세부사업)에서 *회(**,***원) 지출하였고, ‘공설묘지 간이화장실 전기요금’은 편성한 공설묘지 (간이화장실)관리 예산이 아닌 청사관리(세부사업)에서 *회(***,***원) 지출하여 총 **건(총 ***,***원)을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예산 목적 외 사용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예산 집행 관련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지출원인 행위 전 지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11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은 공용차량 이용 공무수행 중 사고 발생(20**. **. **.) 으로 인한 자기 부담금을 20**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6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⁴⁾한다고 되어 있다.

4) 다만,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는 경우,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공용차량 이용 공무수행 중 사고 발생(20**. **. **.) 으로 인한 자기부담금⁵⁾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향남읍은 공용차량 이용 공무수행 중 사고 발생(20**. **. **.) 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을 당해연도 예산이 아닌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출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공무용 차량을 이용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당해연도 예산이 아닌 20**년 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을 인정하였다. 다만, 당시 차량 수리는 보험 접수 후 완료되었으나, 자기부담금 지급 요청 시점에 공공운영비 예산 잔액이 0원으로 해당 연도 내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예산의 이용·전용·통계목변경 등 당해연도 내 적법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예산 잔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차기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전년도에 발생한 경비를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5) 공용차량 이용 공무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연 1회 자기부담금 지원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관련 알림 (재산관리과 -1963, 2023. 8. 10.)]

처분번호	12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 보

제 목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포인트 처리 누락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부서별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지출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의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훈령 제12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립되지만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에 직접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조치를 하거나 구매에 직접사용 또는 불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건, 총 **,**,***원)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원을 구매자 개인의 명의로 적립하였으며, 적립한 인센티브를 세입조치를 하거나 구매에 직접 사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포인트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시 발생하는 포인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 **. *. 발생한 **,*** 포인트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사(○○○)에 요청하여 회수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회수 처리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전자상거래 이용시 발생한 포인트를 반납하거나 구매에 직접 사용 또는 불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처분번호	13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10단계로 구성된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⁶⁾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굴된 가구에

6)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



대하여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회의를 거쳐 복합적인 욕구로 1개월 이상의 중장기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례관리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기도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대상가구의 변화를 확인한 후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초 사례회의 결과 단기 개입 또는 단순 서비스 연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는 서비스 연계 가구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서비스 연계, 점검 및 사후관리 절차는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재발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9개월 이내 2회 이상(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연계 가구는 연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가구와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 **가구에 대하여 사례 종결 후 실시하여야 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등록·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표1]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 - “생략”

[표2]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업무 관리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등록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14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경로당 지방보조금 지급 및 유지보수사업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은 노후화 된 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편의증진을 위해 물품 구입이 필요한 경로당에 지방보조사업⁷⁾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 경로당 지방보조사업 교부 및 지급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 목적과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7)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함(지방보조금법 제2조)

또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리 경로당 등 총 **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천원의 교부를 결정하였음에도 교부결정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1] 경로당 지방보조사업 교부결정 미통지 현황 - “생략”

3.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화성시 경로당 지원 사업 안내(화성시 공고)」에 따르면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조건으로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하자보수이행 보증 증권 또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경로당)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공사 내용에 적합한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공종별로 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실내건축(★)	1년	판금	1년
토공	2년	철근콘크리트 및 포장	3년
미장·타일	1년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방수	3년	보링	1년
도장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석공사·조적	2년	건축물조립	1년
창호설치	1년	온실설치	2년
지붕	3년	보일러 설치(◆, ●)	1년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철물(★,●의 철골 제외)	2년	◆, ■ 외의 건물 내 설비	1년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사업 결정 및 정산 과정에서 「화성시 경로당 지원 사업 안내」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리 경로당 등 *개소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 보조사업자에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그 준수 여부를 확인·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준수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 및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사업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 통지를 하고,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의)
- ②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에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15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 보

제 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주차가능 표지’ 발급은 장애인 등급제 개편 이전(2019.7.1. 이전) 등록장애인 중 과거 주차가능 표지 발급 이력이 있는 사람이 유효기간 경과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장애 유형 전문의가 장애와 보행상 장애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장애와 유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다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해당 장애와 보행상 장애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진단서 징구 및 주차가능 표지 발급 이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표지 발급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주차가능 표지 *건을 발급하면서, 유효기간을 제한없이 발급하거나, 발급일(20**년) 기준으로 약 *년이 경과한 20**년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징구하는 등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현황 -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상기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주차 표지 유형 변경 등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처분번호	16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3,465,00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감독 및 정산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에서는 주민생활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 ***-*번지 일원 옹벽 보수공사” 등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건설 공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⁸⁾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6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 ***-*번지 일원 옹벽 보수공사” 등 *건을 시행하면서 준공 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 및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공사 준공 서류를 확인한 결과 “○○○○ ***-*번지 일원 옹벽 보수공사”에서는 유로폼 및 비닐을 시공하지 않고, “○○○ ***번지 외 1개소 교량 확장공사”에서는 시스템비계 및 비계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 하도정비(준설)공사”에서는 교통안전처리시설을 미설치하였다.

결과적으로 향남읍에서는 시공자가 당초 설계서 및 계약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경 시공된 공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사비 3,465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공사비 정산 미이행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향후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전 점검과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 ① 공사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지급한 공사대금 중 초과 지급한 3,465,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번호	17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에서는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향남읍 ○○○ ○○○○
옹벽설치공사’를 주식회사 ○○○○○과 총 공사금액 **,**,***원에 계약 체결 후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남읍에서는 ‘향남읍 ○○○ ○○○○ 용벽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마을 이장의 추가 포장 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 마을안길[당초: 덧씌우기 (15cm)-40㎡, 소규모 포장(t=5cm, 15cm)-0㎡]을 추가포장[변경: 덧씌우기(15cm)-112㎡, 소규모 포장(t=5cm, 15cm)-182㎡]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는 당초 계약된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아닌 새로운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 추가공사가 필요하였다면 당초 계약하여 추진 중인 공사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다.

[표] 공사 설계변경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준수에 유의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8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관리비 계상 소홀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개요

향남읍에서는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후 건설 공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⁹⁾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 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 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고,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보전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건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여 환경 훼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다.

[표] 환경보전비 미계상 사업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계상 항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보전비 등 관련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19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유지보수사업(단가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20**년 향남읍 ○○○ ○○○○ ○○사업(단가계약)” 을 *차에 걸쳐 분할 발주하였으며, 각각 1인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아래 [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분할계약 가능 공사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각 호 재구성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표 1]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표 1] 각 호의 공사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20**년 향남읍 ○○○ ○○○○ ○○사업(단가계약)”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했으며, 분할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이를 일괄 발주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20**년 향남읍 ○○○ ○○○○ ○○사업(단가계약)”의 공사 내용과 성격이 분할계약 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업예산이 20**년 향남읍 본예산에 **원 편성되어 일괄 발주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래 [표 2]와 같이 *회 분할하여 각각 1인수의계약으로 사업 시행하였다.

[표 2] 부적정 분할 발주(1인수의계약)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공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 계획 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괄 발주 대상 공사를 분할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20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2인이상견적 제출 공고기간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향남읍 ○○리 ***번지 외 *개소 교량 확장공사”(추정가격 **, **, **원, 전문공사) 수의2인이상견적 제출 공고를 20**. *. **.(월)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게시하였으며 20**. *. **.(목) 14:00에 견적서 제출을 마감¹⁰⁾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1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전자입찰서(입찰서와 견적서를 모두 포함) 제출 마감 일시로부터 1시간 후를 개찰 일시로 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을 공고 마감으로 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¹¹⁾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수의 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¹²⁾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는 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공고(이하 “수의2인 이상견적 제출 공고”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초일 및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향남읍 ○○리 ***번지 외 *개소 교량

11)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12)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확장공사” 수의2인이상견적 제출 공고를 20**. *. **.(월) 나라장터에 게시하였으므로 최소 20**. *. **.(금) 이후 견적서 제출을 마감해야 했으나, 20**. *. **.(목) 14:00에 견적서 제출을 마감(2일 14시간 공고)함으로써 3일 이상 공고를 하지 않았다.

[표] 수의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기간 부적정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수의2인이상견적 제출 공고기간을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21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 지연 및 미 실시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20**년, 20**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20**년 *명, 20**년 *명)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성시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채용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달한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전형과 면접평가를 필수로

하여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부서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즉시(면접평가 최소 1주일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조회를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에 요청하여 채용예정자의 2년 이상 연속채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즉시(면접평가 최소 1주일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조회를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에 요청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년, 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과 공공노무팀에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를 요청하지 않거나(20**년), 면접평가 후 근무경력조회를 요청(20**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2년 이상 연속채용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조회 지연 및 미 실시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예정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조회를 지연하거나 미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22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내 농지 최초 취득 신청자 대상 농지위원회 심의 미실시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023년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이하 “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편람에 따르면,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이라 함은 관내 농지

소유 유무 또는 과거 소유 이력과 관계없이 2022. 8. 18. 이후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향남읍은 화성시 또는 연접한 시(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의 농지 소유 이력과 무관하게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화성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건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2022. 8. 18. 이후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향남읍에서는 화성시 또는 연접한 시(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 8. 18. 이후 화성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농지위원회 심의 미 실시 현황(관내 농지 최초 취득 신청자) - “생략”

3.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초과 확인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외에는 소유할 수 없으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는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심사요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농지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신청자 및 그 세대원 전부가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및 농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자 및 그 세대원 전부의 소유농지 총면적을 확인하여,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이번 감사대상 기간 발급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현황을 확인한 결과, 향남읍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 및 그 세대원 전부가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에 대해 [표 2]와 같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 상한 초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처리 시 「농지법」
등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23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83,75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연가일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가보상일수를 산출하여 市 회계과에 보고하였고, 회계과에서는 보고된 바에 따라 향남읍 소속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 [표 1]과 같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휴직기간¹³⁾·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13) 육아휴직기간,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기간,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표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2023년 이전 기준)	재직기간	연가일수(2024년 기준)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6년 이상	21일		

그리고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은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¹⁴⁾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미사용하거나 미보상 연가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표 1]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복무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 라 한다)는 해당 연도 중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 공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비고1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비고2 : 해당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 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봄(45일 초과는 2개월)

※ 「복무규정」 및 「예규」 재구성

또한 미사용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14) 병가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은 제외),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교육훈련 기간(1개월 이상인 경우) 등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복무규정」 및 「예규」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산일수, 공제일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속 직원의 연가일수를 산정함으로써 연가 보상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명(*건)의 연가일수를 과다산정함으로써 연가보상비 283,750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 2]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 283,750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분번호	24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지연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은 20**. *. *. 자 인사발령으로 당초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이 교체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 사유가 발생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법 제3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책임 및 선임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¹⁵⁾에 있는 사람으로서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남읍은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총무과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총무과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화성소방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표]와 같이 20**. *. *. 자로 총무과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음에도, 법정 통보 기한(20**. *. **.)을 넘긴 20**. *. **. 에 화성소방서장에 통보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를 총 **일 지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통보 지연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인사이동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기한(30일) 내에 적격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연 없이 통보하는 등 관련

15)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등을 지연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5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향남읍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미준수

관 계 기 관 향남읍

내 용

1. 업무 개요

향남읍에서는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이장 임명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통·리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르면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향남읍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맞춰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향남읍에서는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지급일 기준 최소 *일에서 최장 *일까지 선지급하거나, 최소 *일에서 최장 **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이장 월정수당 지급일 미준수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향남읍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이장 월정수당 지급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 인계인수 및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향남읍장은 앞으로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장 월정수당 지급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이 선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IV 모범사례

그늘 없는 행복한 향남읍을 위한 고독사 예방 스마트케어 실천사례

□ 개 요

- 향남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급증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을 목적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위험군 확대에 따라, 선제적 예방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 현 황

- 지역 및 인구 현황
 - 지리적 특성: 도시(아파트단지 · 제약 · 공업단지)와 농업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남서부 교통 중심지 역할 수행
 - 인구 현황
 - 1) 내국인 85,439명 / 외국인 16,392명
 - 2) 총 101,831명으로 화성시 인구의 약 10%차지
 - 복지대상자 현황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25가구 / 2,879명
 - 2) 등록 장애인 3,498명
- 협의체 구성: 총 30명(위원 27명, 당연직 3명)
- 비전 및 핵심가치
 - 비전(슬로건): 그늘 없는 행복한 향남읍
 - 핵심가치: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

□ 추진실적

○ 사업명: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 추진배경

- 관내 복지대상자 사망사건 발생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상시 안전 모니터링 필요성 대두
-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기 기간이 길고 대상자 제한이 있음
-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중 고독사 고위험군 약 100명 확인
- 이에 ICT 기반 감지센서를 활용한 선제적 안전관리 서비스 도입

○ 추진내용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 신청기간: 상시
- 설치기기: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2~4개),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 주요 기능
 - 1) 활동량 · 수면 · 화장실 이용 분석
 - 2) 이상 징후 감지 시 유선 확인 및 가정 방문
 - 3) 응급호출기 통한 119 직접 신고 가능

○ 추진실적

- 운영기간: 2025. 7. 18. ~ 현재
- 운영내용: 스마트케어 사업 대상자 이상 징후 모니터링(1일 2회-오전/오후)
- 사업비: 5,200천원(26년 1월~3월)
- 설치현황: 45가구 기기 설치 완료
- 응급 대응 실적: 응급벨 작동으로 119 출동 2건
 - * 사례1: 72년생 여성은 신장장애 등 중증 질환으로 투석 후 화장실 이동 중 넘어져 왼쪽 팔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화장실 내 응급벨을 눌러 119가 출동해 상처 치료 후 귀가함.
 - * 사례2: 57년생 남성 대상자는 전립선암, 후두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저녁 시간 현기증으로 실내에서 쓰러져 응급호출을 통해 119가 출동함. 병원 이송 후 뇌병변 전단계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거쳐 퇴원함.

○ 추진성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 중 사고 예방 효과
-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상시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 독거노인 3명 서비스 의뢰
- 이용자 만족도 평균 4.77점(5점 만점)